

저작권법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에 의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Databases on the Copyright Law and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Law

장 태종* · 유재영** · 정의섭***

Tae-Jong Jang · Jae-young Yoo · Eui-Seob Jeong

차례

1. 서 론	5. 현행법에 의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보호핵심
2. 저작권법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의 내용 및 필요성	6. 국내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적인 보호문제
3.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보호 보호방법	7. 결 론 • 참고문헌
4. 과학기술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제작자와	

초 록

현재 저작권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은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 데이터베이스 보고서의 추가 보호론에 데이터베이스는 경제 및 과학에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인터넷 상의 핵심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공공·민간 모두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법적 보호의 전반적인 문제점들과 현행법에 의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핵심적인 내용과 추가적인 보호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중대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방안 마련은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키워드

저작권법,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권리보호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Senior Researcher, Material & Component Information Analysis Dept., KISTI, tjang@kisti.re.kr)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Principal Researcher, Material & Component Information Analysis Dept., KISTI, yoojy@kisti.re.kr)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Principal Researcher, Material & Component Information Analysis Dept., KISTI, esjng@kisti.re.kr)

• 논문접수일자 : 2005년 5월 9일

• 개재확정일자 : 2005년 6월 16일

ABSTRACT

Currently the copyright law and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law aim to protect the producers of databases and digital contents. A report on databases in the United States describes that an additional protection of databases is needed as databases get more significant in terms of science and economy and become a key factor on Internet. At this moment, Korea does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atabases of science and technology when we look into any public or civil organizations. Accordingly this paper deals in depth with overall issues surrounding the legal prote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databases, key contents for science and technology databases protection by current laws, and additional protection problems.

Considering that the indu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databases plays a pivotal role in the secur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preparation of legal measures to properly protect databases as one of the policies for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databases should not be overlooked.

KEYWORDS

Copyright Law,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ial Development Law, Science Technology Database, Rights Protection

1. 서 론

오늘날 전세계는 멀티미디어 열풍에 휩쓸려 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이른바, “정보화 사회”의 고도화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리라 예측되는 가운데, 이를 견인할 필수적 수단이 다름 아닌 멀티미디어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향후의 국가경쟁력 확보가 정보화에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이를 축진시킬 관련법을 제정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도 정보화를 앞당기자는 구호성 표어마저 등장되

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 인프라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반하여 초고속정보망에서 유통되는 국산 디지털 콘텐츠는 아직 그 기반이 아주 취약하다. 이에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자 새롭게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 법이 제정하게 되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는 문화, 교육, 보건,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과학기술 및 콘텐츠개발, 기반조성 등을 위한 정부역할은 뚜어서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 범정부차원의 종합추진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 법에서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조기에 조성하고 범국가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육성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벤처 업계 및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하여 창업의 촉진,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유통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조성 및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위해서는 저작권법에서 단순한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의 의미와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라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법의 필요성과 저작권법의 50년간 보호기간과는 달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분이나 인문사회분야를 막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는 잘 만들 어도 데이터베이스로서 전략 활용차원에서 되 돌아 봤을 때 독창성 결여로 인한 데이터베이스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이나 회사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관계당국의 요원한 대책에 맡겨놓고 있는 실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특별한 특징이 없고 독창성 결여로 인한 데이터베이스의 방치는 현대정보사회의 생활 및 그 발전에 불가결한 요소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을 위시한 일부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거나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래서 각국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특히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있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앞으로의 전체 산업발전은 정보산업의 발달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데이터베이스 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그 보호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하에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의 내용 및 그 필요성과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문제점과 국제조약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동향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현행법에 의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핵심과 향후 추가적인 보호 문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주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과학기술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보호 입법 필요성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하겠다.

2. 저작권법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의 내용 및 필요성

2.1 저작권법 개정내용

2003년 5월 27일 시행한 저작권법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보호의 강화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요건의 설정

을 들 수 있다.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성있는 저작물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호 받지 못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하겠다.

다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을 가지게 된다면 편집저작물로서의 보호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선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 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 침해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 개정하였다.

2.2 데이터베이스 권리보호 강화

편집물이란 소재의 집합물을 말하며,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소재의 집합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대해서는 5년간의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저작권법 제73조의 6 조항).

종전에는 창작성 있는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여 권리로서 보호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개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2호의 5 및 제73조의 2 내지 제73조의 9 조항).

현행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가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개신 등을 한 때부터 5년 동안 보호된다.

2.3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의 의의 및 필요성

2.3.1 의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자체의 발전을 위하여

입법 중인 동 법은 저작권법의 대안으로 제시되어진 법률이라고 하겠다. 즉,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만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부분은 작다고 하겠다(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2002). 따라서, 동 법을 통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를 보호하고자, 창작성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겠다.

2.3.2 주요내용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의 제정 목적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의 강화에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지식기반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추세에 따라 그 핵심이 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및 기술 육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 성장률은 매년 33%에 이르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인구가 많고, 초고속통신망 등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발달하여 있으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적 자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및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로서 별도의 육성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4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보호법의 필요성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보호의 취지를 디지털화의 축진과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한 투자 유도로 설명하였으나, 이 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꾸준히 콘텐츠가 디지털화되고 있어 “디지털화”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만큼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에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도 너무나 많은 디지털 콘텐츠들이 정보통신망을 오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콘텐츠의 “양”이 아니라 콘텐츠의 “질”에 의하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때문에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것인가?

누군가 투자를 하여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유료 상품화한다 하여도, 그것이 곧 다른 경로에서 무료로 제공되거나, 초기 투자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제공된다면 콘텐츠를 최초로 디지털화한 자는 투자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의 문제는 저작권법과 같은 기존의 법으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가 보호될 수 없느냐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디지털 콘텐츠의 기초소재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디지털화하거나, 저작권자와 미리 모든 경우에 대하여 계약을 철저히 하고 저작권자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면 저작권에 기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3.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보호

3.1 보호배경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정훈조(2002) 등은 논리적 구조를 tree 형태의 자료 구조로 표현하는 계층형 데이터베이스와 DB는 논리적 구조가 그래프의 성질을 갖는 망형 데이터베이스, 트리형이나 네트워크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로서, 즉 김석영(2002)은 과학기술일반, 수학, 물리, 전기·전자, 기계·금속, 토목·건축, 화학·화공, 에너지·원자력, 생물공학, 의학, 약학 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데이터베이스 보고서(U. S. Copyright Office 1997)에 의하면 “데이터베이스는 경제 및 과학에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고 인터넷 상의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으며, 그 효용가치가 매우 크다”라고 언급했듯이 선진국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보호노력의 일환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법안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3.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보호의 필요성

2003년 5월 27일 개정한 저작권법은 기존 저작권법 제4장(저작인접권)에 ‘제4장의 2’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마치 저작인접권자로 취급하여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물권(物權)에 준하는 재산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 제2조 12의 4호에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면서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는 존재하지 않고 그에 인접하는 권리자만 존재하는 기이한 결과를 낳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개정법의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보호가 저작권법 제1조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이다.

WIPO 저작권조약 제5조와 TRIPs 제10조 제2항도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 저작권법에 포함되어 있다. 아직까지

창작성이 없는 편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고, 저작권법 이외의 독자의 권리로서 개념화하여 보호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 공동체 지침'에 따라 유럽공동체 일부 국가들 등에서 입법이 있을 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데이터베이스 보고서의 내용처럼 선진국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법안들이 필요할 것이다.

3.3 국제조약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동향

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의 팔호 내에서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정의되며, 이는 편집물의 하나로 인정된다. 편집물이라 함은 기존의 자료나 데이터를 수집,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이 중에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 편집 저작물이 된다.

구미 저작권법 제도하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편집 저작물의 한 종류로 보호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해석상 편집 저작물의 한 종류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이후 199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회'의 (Information Meeting on Intellectual

Property in Database)'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각국 입법 및 각 회원국들이 제출한 정보를 가지고 토론을 하였는데, 대체로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출되었다(장태종 2002).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2002)는 199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저작권 상설위원회에서 시청각 실연의 보호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와 함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대표는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근거하여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주장하였고, 미국 대표는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라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할 필요는 있으나, 공정 이용과 공익 목적에 의한 예외의 설정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인도, 아프리카 지역 등 개도국들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교육·과학 목적 등의 이용을 저해하여 개도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 보호방안이 논의되고 보호체계를 선택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3.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1996년 12월에 체결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 제5조는 "내용의 선택과 배열로 인하여 지적창작물이 되는 자료 또는 기타

소재의 편집물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저작창작물로서 보호된다. 이 보호는 당해 자료 또는 기타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그 편집물에 수록된 자료나 소재에 존속하는 저작권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TRIPs 협정 제10조 제2항과 동일하다. 즉, 데이터베이스는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저작물로 보호된다.

한편, 1996년 12월 조약의 체결을 위한 WIPO 외교회의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조약안(Draft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Database)도 제출되었으나, 위 조약안은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WIPO 외교회의는 데이터베이스 보호 문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3.3.2 유럽연합(EU)에서 데이터베이스 논의

유럽연합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미 1996년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Directive 96/6/EC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 of the European Parliament 1996). 이 지침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체계 안에서 2000년부터 ‘독자적인(sui generis)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권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데이터

베이스의 내용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substantial part)을 추출하거나 재이용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 권리(지침 제7조)로 규정하였으며, 그 존속기간을 15년으로 하였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계속적인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투자로 간주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양적이나 질적으로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보호기간을 갖게 된다(지침 제 10조)고 규정하여 변경된 부분에 대해 권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3.3.3 미국에서 데이터베이스 논의

미국법원은 현재까지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준을 창작성에 근거하여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6년 유럽연합의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법안’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우려한 인터넷 서비스 업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을 25년으로 규정하였고,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이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반하여 내국 민대우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

이후 다시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수집물에 대한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사용 부분을 근거로 정보수집물 제

작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정보수집물의 전부 또는 양질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분을 상업적 목적으로 추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1999년 하원에 제출된 정보수집물의 침해금지법안(The Collections of Information Anti piracy Act, HR 354), 1999년에 제출된 소비자 및 투자자의 정보접근법안(The Consumer and Investor Access to Information Act, H.R.1858) 등이 있다(U.S. Copyright Office 1997).

미국 데이터베이스 보고서의 내용의 추가 보호론은,

- ① 데이터베이스는 경제 및 과학에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고 인터넷 상의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으며, 그 효용가치가 매우 크다.
- ② 데이터베이스 제작·유지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 ③ 이에 반하여 복제·배포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데는 저비용으로 가능하다.
- ④ 현재의 법률로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에 부적절하다.
- ⑤ 적절한 법적 보호 부족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유지 투자의 감소로 공중의 손해이다.

3.3.4 일본에서 데이터베이스 논의

일본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본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만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과 구별하여 별도의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를 “논문·수치·도형 기타 정보의 자료로서, 그것들의 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0호의 3), 제12조(편집저작물)의 규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는 한편, 제12조의 2를 신설하여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이라는 제목 하에 “①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인 구성으로 인하여 창작성을 가지는 것은 저작물로 보호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구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서 위와 같이 “…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가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그 이전의 단계 즉, 기계적으로 입력하여 컴퓨터에 의하여 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계통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족하다.

일본의 저작권법이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일반 편집저작물과 그 보호의 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이유는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 또는 그 상대적 위치와 같은 물리적 배열에 창작성이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소재로 되는 정보의 선택·배열에 창작성보다는 예

컨대, 문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초록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수치정보나 화상처리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래프나 일람표를 만드는 등 가공이 되어지며, 그밖에도 원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 추출된 주제나 중요개념을 표현하는 키워드가 부여되는 등 단순한 편집저작물과는 다른 창작성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3.3.5 멕시코에서 데이터베이스 논의

멕시코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독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멕시코 저작권법은 모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① 모든 매체에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복제할 권리, ② 번역, 각색 등 변경할 권리, ③ 데이터베이스의 원본이나 사본을 배포할 권리, ④ 공중전달권, ⑤, ⑥에 언급된 운영의 결과물을 복제, 배포 또는 공중 전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제108조 및 제110조). 그러나 멕시코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독자적인 권리에 관한 특별한 제한이나 예외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3.4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물권에 준하는 권리 부여의 위헌성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와 별도로 창작자(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22조는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근거 규정인데, 이것은 권리부

여의 전제로 ‘창작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창작성을 묻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물권적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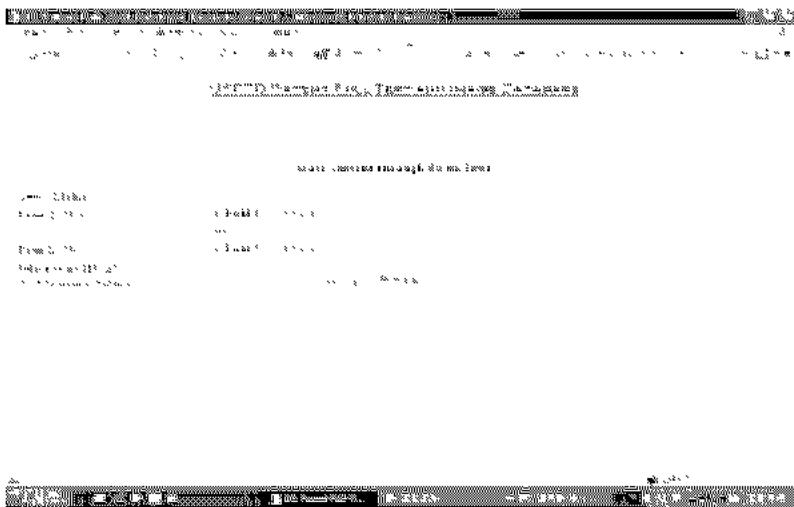
한편,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성립에 권리의 침해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에 대해서 저작권 등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의 무단 이용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不法行爲)에 따른 구제 수단과 그 구체적인 요건을 명료하게 규정하는 입법도 가능하다.

단순한 소재선택과 배열로서 전개화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독창성이 부족한 경우의 데이터베이스 예로서 나타냈다(〈그림 1〉 참조).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정은, ① 자료·정보를 수집, ② 수집된 정보를 검색을 염두에 두고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계통적으로 가공·정리, ③ 정리된 자료를 차례로 입력하여 장부 파일을 작성, ④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이 용이한 형태로 만드는 등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③을 순차편 성파일(sequential file)이라 하고, ④를 임의접근 파일(random access file)이라 한다.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③·④의 단계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나 ②의 단계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미국·영국과 같이 편집저작물의 일종으로 보호하되, “素材의選



〈그림 1〉 소재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부족한 데이터베이스

擇 또는 配列의 創作性(저작권법 제6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소재(정보)를 복제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만, 개개 데이터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아니하여 이를 복제하여도 법적 책임을 물기가 어렵다. 이러한 저작권법에 의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3.5 물권 방식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드는 사회적 비용

데이터베이스는 그 특성상 물권적 재산권을 설정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안'이 취하고 있는 재산권 설정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데이터베이스는 유체물(有體物)과 비교해 볼 때 그 가치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단 가치를 나타내는 기본적 단위가 없고, 특히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서 그 가치가 유지되므로, 권리의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재산권 설정 비용이 많이 듈다.

둘째,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이미 생산된 데이터베이스를 재생산하는 데에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재산권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역으로 이에 필요한 감시비용과 강제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일단 타인이 데이터베이스를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생산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그 사용을 감시하고 금지하는 것만이 재산권을 강제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것은 정당한 사용자들에 대한 또 다른 권리 침해를 야기할 것이며, 또한 재산권 설정을 위한 감시비용과 강제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3.6 공공 데이터베이스

정부안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보통신부 입법예고 2001.5호)에서는 공공데이터베이스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에 대한 법조항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들이 누락되어 있다.

공공 데이터베이스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국민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공공기관이 비밀로 유지해야 할 정보 이외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정부만이 그 유일한 정보 출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를 이용하여 특정인만이 공공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4. 과학기술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보호방법

4.1 지적재산법으로서의 위치

광의의 지적재산법은 행위 규제형과 권리부여형(협의의 지적재산권)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中山信弘 1998).

무형의 정보(콘텐츠)의 이용은 누군가의 접유가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소멸하지 않는다 는 그 객체의 특성이 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이용이 자유라는 전제하에 일정한 경우 이러한 이용행위를 부정 경쟁행위 등으로 보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자가 이를 용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 규제형이 있다.

그리고 이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한 경우 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법 형식으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무형의 자산)를 권리의 객체로 특정하고, 그 객체에 대해 소유권 유사의 준물권(準物權)을 부여하여 전반적인 이용행위를 지배하게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공익상 권리를 제한하는 권리 부여형이 있다. 즉, 광의의 지적재산법은 행위 규제형과 권리부여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신재호 2000), 이러한 지적재산법의 객체는 일반적으로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적재산법 분야로 새로이 확

장되는 영역에서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에서와 같이 부정경쟁의 방지 내지 투자자 본의 보호라는 성격이 강해지고 있으며,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가 지적재산법의 보호 객체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지적재산법의 체계상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中山信弘 1998).

특히 권리 부여형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의 객체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디지털화 과정에서 보호가치를 착안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다양한 플랫폼(<http://whatis.techtarget.com>) 중 당해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하여 특정한 플랫폼으로 디지털화된 상태를 그 객체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정일훈 2002).

즉, 현실 세계에서의 플랫폼은 해당 콘텐츠 마다 도서, 음반, 영화, 방송 등의 형식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디지털 세계(사이버 공간)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이 가능하고, 어떠한 플랫폼으로 해당 콘텐츠를 구현하느냐가 콘텐츠의 가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는 음반제작자나 방송사업자 이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4.2 저작권법적 접근방법에 의한 보호방법

4.2.1 이용자권의 강화방안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지위를 출판자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와 유사하게 평가할 때 보호방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작권법적 접근방법에 의한 보호방법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출판자나 영상제작자(허희성 2000)와 같이 별도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을 설정받아 그 이용자권의 강화를 통하여 보호하는 방법이다.

즉, 기초가 된 콘텐츠에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이 존재하는 경우 정당한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위해서는 해당 권리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이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한다면 기존의 권리에 의하여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① 독점적 이용허락의 의제, ②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필요한 정도의 포괄적 협의의제, ③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용허락 기간의 설정 그리고 ④ 일정한 조건하에 이용권자에게 소권(訴權)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의 장점은 저작권자 등의 권리 행사(이용허락)로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지위가 발생하므로 전혀 저작권에 저촉하거나 저작권자의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화에 의하여 콘텐츠에 새로이 부가된 임의가치가 여전히 무형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새로이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디지털화하

는자의 입장에서는 그 기초소재가 저작물이든 비저작물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경우만을 비저작물(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포함)을 디지털화하는 경우와 구별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은 정도(正道)가 아니라 생각된다.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는 전제하에 법의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부처간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주는 실익이 있을지언정 차선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작물이 디지털화된 경우와 비저작물이 디지털화된 경우로 나누어 입법화하는 방안은 마지막까지 꾸준히 검토되었다. 이러한 검토는 저작권자 등과의 권리관계만이 아니라 콘텐츠 이용자 측면에서도 비저작물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가 보호될 경우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표시' 제도나 '등록' 제도에 대한 논의는 비저작물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방법으로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4.2.2 저작인접권의 부여방안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 유사의 새로운 권리 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앞서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 플랫폼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된 무형의 상태를 특정하여 권리의 객체로 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소유권 유사의 준물권에 의하여 그 객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행위를 지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이를 저작권법 내에서 저작인접권

으로 규정할 것인 지, 아니면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 right)로 별도로 입법할 것인 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보호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와 거리가 있고,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에 있어 기본적으로 저작물인 지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체계와 조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실연의 경우에는 비저작물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배포와 이용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비저작물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디지털화에 의해 다시 보호한다는 의미이므로 저작권법 체계상 무리가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수용할 경우 기존의 저작인접권자, 특히 음반제작자와의 형평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자칫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과보호는 정보 독점 등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는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끊임없는 업그레이드(갱신)를 요구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그 보호는 단기간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원래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도 과거에는 저작권보다 단기간이었으나, TRIPs 성립 및 지적재산권 강화 추세에 따라 50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 기간을 디지털화에 대한 인센

티브로서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점으로 보기에는 너무 긴 기간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디지털화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면서 보호기간을 단기간으로 조정하기에는 거의 유사한 지위에 있는 음반제작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은 국제적으로 민감한 법으로 이러한 보호를 저작권법으로 해결할 경우 관련 조약 및 국제통상 압력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보호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입법례가 없고, 또 향후 관련 산업발전의 추이에 따라 정착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에서 수용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없지 않을 것이다.

4.3 독자적 권리(디지털화권) 부여방법에 의한 보호방법

“디지털화권”이라는 용어는 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화를 허락할 수 있는 (복제권의 한 형태으로서의) 권리와 ② 콘텐츠를 디지털화한 자가 당해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의미는 후자를 말한다.

비저작물을 디지털화한 경우에는 등록을 권리발생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콘텐츠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 이용이 제한되어 콘텐츠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뿐만

아니라 비저작물을 디지털화한 경우에는 인적, 물적, 재정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디지털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보호기간도 저작물을 디지털화한 경우 제작의 완료일로부터 10년임에 반하여, 비저작물을 디지털화한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사견으로 이러한 제한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화된 콘텐츠가 저작물이든, 비저작물이든 디지털화에 의하여 새롭게 부가된 가치에는 차이가 없으며, 상당한 노력의 투하여부로 보호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향후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고, 등록단계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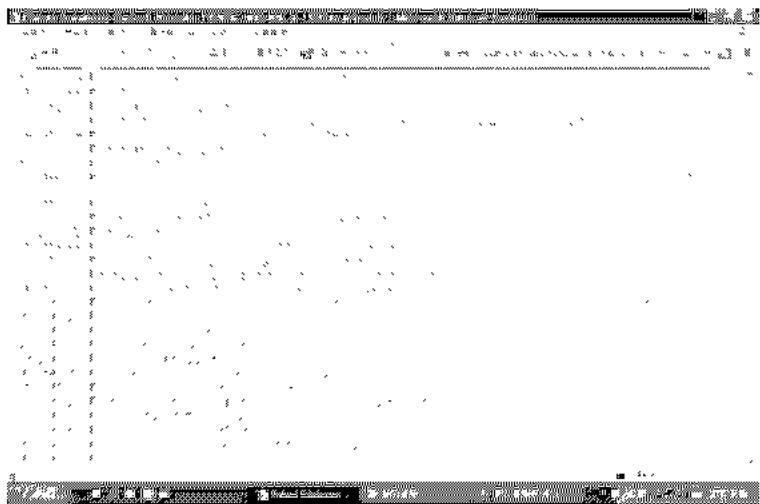
5. 현행법에 의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보호핵심

5.1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독창성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편집저작물에 있어서 소재의 선택 혹은 배열의 독창성이란, 기존의 저작물 혹은 저작물 아닌 것을 일정한 방침을 가지고 선택, 수집 혹은 배열하는 데 있어서 작성자의 개성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그림 2> 참조).

그런데, 데이터베이스가 편집저작물의 일종



〈그림 2〉 선택, 수집 혹은 배열하는 데이터베이스

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있어서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먼저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 독창성에 관해서 보면 주식정보 데이터베이스이거나, 법령판례 데이터베이스이거나 혹은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이거나 간에 우수한 데이터베이스일수록 그 속성상 관련분야의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포함시키려고 할 것이고, 제한된 범위의 소재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기준은 이용자들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개성이 발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따라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 배열의 독창성의 경우에도 배열이란 각 수학적인 산수 정보 간의 전·후

와 같은 위치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전자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루는 정보들이 평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디스크나 태이프 속에 전자파일 형태로 집적되어 있을 뿐이고, 창작적인 배열과는 전혀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다가 컴퓨터의 검색 프로그램의 도움에 의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개별적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의 소재의 배열에 있어서도 독창성을 인정할 정도로 제작자의 개성이 개입될 여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본다.

5.2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보호범위 및 그 한계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독창성의 요건을 갖추어서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경

우에도, 저작권의 효력은 정보(소재)의 창작적인 선택과 배열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고, 정보 자체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보 자체가 독창성을 갖춘 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추출해서 상이한 방식으로 배열하여 새로운 편집물로 만들어도 이를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게 된다.

또 대법원 판결(한국, 대법원 1996)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선택 배열된 편집저작물이지, 선택·배열의 아이디어가 아니므로, 아무리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분류, 선택을 모방을 하였더라도 그 자료(소재)가 다르면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자료의 수집단계에서 이를 무단 복제하여 가거나, 혹은 훌륭한 편집저작물로 성립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파일 전체가 아니라 개별적인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추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독창성이 있는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5.3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보호기간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독창성을 갖추어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는 경우에 그 보호기간은 일반 저작물의 경우와 같다. 즉, 저작자 생존시 및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공동저작물이면 맨 마지막 사망한 공동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며, 법인 등의 저작물이면 공표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즉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은 이보다 가 더 길게 잡은 75년이 적당하다. 과학기술의 5년 동안의 라이프사이클이 15번 정도가 적당하다는 필자의 견해이다.

그런데 일반 저작물과 달리 데이터베이스는 처음 상업적으로 공표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부가, 확대하고, 변경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보호기간의 기산점이 새로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지, 새로 기산되는 것으로 볼 때에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겼을 때 보호기간이 새롭게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지 문제가 된다.

6. 국내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의 추가적인 보호문제

6.1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

유럽연합 지침과 같이 특별법의 형식을 취하되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즉,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여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무단 추출이나 재이용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한다.

6.2 부정경쟁 법리를 통하여 보호하는 방안

특별법의 형식을 취하되,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

고, 경쟁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부당한 이용을 금지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안이다. 정통부 법안이 이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6.3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하는 방법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내용이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는 아니하고 이용자가 부당한 이용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에 부합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방식을 취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규정을 포함하여 정의규정이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6.4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규정하는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독창성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보호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 데이터베이스가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에 독창성

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 가 있다.

7. 결 론

현재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국제적 보호동향은, 한편으로는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외의 새로운 보호 대상으로 이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도 이를 저작인접권의 영역에서 투자의 산물로서 보호하느냐, 아니면 부정경쟁 방지법적 성격을 띤 독자적 법률로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떠한 입법방법을 취하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국내 영토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경을 초월하는 범세계적인 정보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국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WIPO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점차 발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의 보호를 위한 입법은 국제적인 보호동향을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점차 발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의 독창성 결여로 인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데이

터베이스를 처음 만들 때부터 독창성 결여로 인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독창성의 기준에 입각해서 제작할 요건들을 필요로 한다.

아직 많은 국가들이 저작권에 의한 보호 이외에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다른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국제적인 보호 논의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불리 법을 제·개정하기보다는 독창성 소재의 선택 혹은 배열의 독창성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신중을 기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의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국내 관련 학자들 대부분은 데이터베이스의 추가적인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보호 입법 형식과 관련해서는 각기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측과 데이터베이스만을 위한 별도법 마련을 주장하는 측으로 대별되고 있다.

각각의 주장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별도법을 마련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첫째,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적합하고 구체적인 보호법 마련이 가능한 점과 법 마련에 소요되는 노력,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추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제작자의 투자 보호에 있는 만큼 독창성을 보호 근거로 하고 있는 저작권법보다는 제작자의 투자 보호 및 부정경쟁

금지를 반영하는 별도법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셋째, 열악한 상태의 국내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별도법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의 집중적인 육성책의 구심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제작과 유통이 일반적인 저작물과 달리 정보화 촉진 등 산업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의 틀 내에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법을 통하여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만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국내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활동 중인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관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별도 보호법을 마련함으로써 부차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록, 심의 기구 운영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한편 정보 이용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은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이용 금지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정보 독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에 국내에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을 마련하게 된다면, 합법적이고 공공에 이익이 되는 정보의 이용 행위를 저해

하지 않는 선에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국의 입법례를 충실히 분석하는 한편,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것이다.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중대한 뜻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의 적절한 보호방안 마련은 간과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이다.

참고문헌

- 김석영, 2002, 과학기술분야 해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평가연구, 『정보관리연구』, 33(1): 68.
- 신재호, 2000,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서울: 전자신문사.
- 오승종, 이승완, 2000, 『저작권법』, 개정판, 서울: 박영사.
- 이상정, 정준민 외, 2002, 『표시제도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 이상정, 2002,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 법의 제정과 의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소식』, 2002년 1월: 128.
- 장태종, 2002, 국제조약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동향, 『지적재산21』, [서울: 특허청].
- 정상조, 2001, 데이터베이스 법적 보호, 『디지털 재산법연구 제1권 제1호』, [한국 디지털 재산법학회].
- 정일훈, 2002, SC 칼럼, 『스포츠 조선』, 2002년 2월.
- 정훈조, 2002, 『데이터베이스1』, 천안: 호서대학교.
- 한국, 대법원, 1996, 대법원판례 1996, 6, 14 선고 96다 6264.
- 한규현, 2001, 온라인디지털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연구, 『고대법학』, [서울: 고려대 특허법무대학원].
- 허희성, 2000, 『신저작권법축조해설(하)』, 서울: 범우사.
- 中山信弘, 1998, 『工業所有權法(上)』, 第二版, 弘文堂.
- Directive 96/6/EC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 Judgement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C 241/91 and C 242/91) : 6 Apr. 1995.
- U.S. Copyright Office, 1997, Report on Legal Protection for Databases, 재인용: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0, 데이터베이스의 추가보호, 『저작권 연구자료』, 34: 84~93.
- William S. Strong, 1994, "Database Protection after Feist v. Rural Telephone Co," *Journal of Copyright Society of the U.S.A.*